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1일, 이수진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5.9.2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9.23.)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5.9.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수진의원)

현행법 개정(법률 제20903호, 2026.1.1.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하도록 규정함.

한편, 현행법 제92조에 따르면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소득대체율은 ‘납부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이 경우, 12월에 추납 신청 후 1월 납부 시 성실납부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납부 근거 규정인 제92조의 개정이 필요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2025년 4월 법률 제20903호로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현행 9%인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2025년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은 일시 인상이며 2026년부터 43%로 적용될 것이 예정된 상황에서는 보험료율과 명목소득대체율의 조합이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의 신청 시기에 따라 일반 가입자에 비하여 유리해지는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개정안은 추납보험료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월은 현행대로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의 산정 기준월은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험료율과 명목소득대체율의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추납보험료와 기본연금액의 산정 기준월을 서로 일치시킴으로써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신청 시기를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선택하려는 유인을 없애고, 일반 가입자와의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로 보임.

아울러 추납보험료 보험료율 산정 기준월이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되면, 분할납부를 신청한 가입자의 경우 매 분할납부분의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분할납부분이 산정되므로 일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026년 이후 예정된 보험료율 인상의 적용을 받게 되는바, 일반 가입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추납보험료 보험료율의 산정 기준월을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부칙에는 안 제92조제3항 및 제4항의 적용례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어느 경우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법 시행 이후 제92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등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두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안 제92조제3항 및 제4항 중 “납부기한일”은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6항 등에 규정된 ‘납부 기한’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일관된 용어 사용을 위하여 “납부기한일”을 ‘납부 기한’으로 수정하

면서 안 제92조제4항의 내용을 같은 조 제3항에 함께 규정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제92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부터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적용례를 추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일관된 용어 사용을 위하여 “납부기한일”을 “납부 기한”으로 수정하고,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이 법 시행 이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부터’로 규정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2조제3항 본문 중 “제7항”을 “제6항”으로, “납부기한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를 “하되, 그 연금보험료 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5항”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조(종전의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2조제3항 및 제4항의”를 “제92조제3항의”로 한다.

제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② (생략) ③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제7항에 따른 납부기한일</u> ----- ----- ----- ----- ----- ----- ----- ----- ----- -----.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 <u>제6항-----납부기한</u> ----- ----- ----- ----- -----하 <u>되, 그 연금보험료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u> --- ----- -----.
<신설>	④ 제3항의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는 제7항의 따른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	<삭제>

	<u>을 기준으로 제88조</u> <u>에 따라 계산하</u> <u>되, 그 연금보험료</u> <u>계산을 위한 기준</u> <u>소득월액은 추후</u> <u>납부를 신청한 날</u> <u>이 속하는 달을 기</u> <u>준으로 한다.</u>	
④·⑤ (생략)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④·⑤ (개정안 제5 항 및 제6항과 같 음)
⑥ 제1항부터 제5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 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 료의 납부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⑦ -----제6 항----- ----- ----- ----- ----- ----- ----- ----- ----- -----.	⑥ -----제5 항----- ----- ----- -----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 안과 같음) 제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
한 경우부터 적용
한다.

제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대한 특례) 제9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32년까지의 기간 동안 12월에 추후 납부를 신청하고 같은 월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추납보험료를 같은 월의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3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대한 특례) 제92조 제3항의

	1. ~ 8. (생략)	1. ~ 8. (개정안과 같음)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3항 본문 중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를 “제6항에 따른 납부 기한이”로, “한다”를 “하되, 그 연금보험료 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대한 특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32년까지의 기간 동안 12월에 추후 납부를 신청하고 같은 월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추납보험료를 같은 월의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 2025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90

2. 2026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95
3. 2027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0
4. 2028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5
5. 2029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10
6. 2030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15
7. 2031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0
8. 2032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5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② (생략) ③ 추납보험료는 <u>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u> 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u>한다</u> .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제6항에 따른 납부 기한이</u> ----- ----- ----- <u>하</u> <u>되, 그 연금보험료 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u> -----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